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63호 2021. 5. 4. (화)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57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1-59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인가(3차)  
고시.....3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499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1-50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정정).....7
- 정선군 공고 제2021-510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21-526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1-536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
  
- 정선군 공고 제2021-542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57호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결정  |       | 실시계획 변경인가(㎡)                                                                                                                                                       | 비고 |
|------|--------|-------|--------------------------------------------------------------------------------------------------------------------------------------------------------------------|----|
|      | 세부시설명  | 면적(㎡) |                                                                                                                                                                    |    |
|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 4,824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류장 A=4,824㎡(구역면적)<br><input type="checkbox"/> 증축내용(A=335.45㎡)<br>▪정비실 A=166.50㎡                      ▪자동차장 A=117.90㎡<br>▪차 고 A=51.05㎡ |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안전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1. 8.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불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 순<br>번 | 위 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 소            | 성명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br>외의권리<br>의종류및<br>내용 |
| 1      | 정선읍<br>북실리 | 618-13 | 전  | 147     | 147   | 정선읍<br>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                          |
| 2      |            | 757-3  | 대  | 1,493   | 1,493 | 정선읍<br>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                          |
| 3      |            | 757-4  | 도  | 273     | 273   | 정선읍<br>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                          |
| 4      |            | 757-5  | 대  | 1,316   | 1,316 | 정선읍<br>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                          |
| 5      |            | 757-7  | 대  | 1,599   | 1,595 | 정선읍<br>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                          |
| 계      |            | 5필지    |    | 4,828   | 4,824 |                |     |       |    |                            |

정선군 고시 제2021-59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인가(3차)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3차)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군계획시설(하수도) 사업

나. 명 칭 :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군계획시설 결정        |        | 실시계획 인가                                                                                                              | 비 고 |
|-----------------|--------|----------------------------------------------------------------------------------------------------------------------|-----|
| 시설명             | 면적     | 금회시행                                                                                                                 |     |
| 여량면<br>공공하수처리시설 | 4,563㎡ | □ 사업부지면적 : 4,417㎡<br>- 당 초 : 오수처리시설(기계, 전기) 증축(A=158.10㎡)<br>오수처리시설(휴게실) 증축(A=127.10㎡)<br>- 금회변경 : 약품실동 증축(A=24.73㎡) |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토지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소유권이외<br>권리의종류<br>및 내용 |
| 1  | 여량면<br>여량리 | 667 | 잡  | 4,602.7         | 4,417           |     | 정선군 | -     | -   | -                      |
| 계  |            | 1필지 |    | 4,602.7         | 4,417           |     |     |       |     |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499호

##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

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정선군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033-560-2238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033-560-2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50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정정)

1. 정선군 고시 제2003-41호(2003. 5. 09)로 최초 결정되고 정선군 공고 제2021-393호(2021. 4. 09)로 공람·공고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건에 대하여 편입토지 면적 오류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사업
- 2)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결정     |                     | 실시계획인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연장·폭원               | 금회시행                |     |
| 도로  | 소로 2-14호선 | L=256m, B=8.0~10.0m | L=256m, B=8.0~10.0m |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노상균)
- 2)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2021. 4. 30.~2021. 5. 14.)

사. 공람장소: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정정):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 순<br>번 | 위 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 소   | 성명         | 관계<br>인 | 성명 | 소유권이<br>외의권리<br>의종류<br>및<br>내용 |
| 1      | 정선읍<br>봉양리 | 919-5   | 제  | 271     | 139   |       | 국(건설<br>부) | -       | -  | -                              |
| 2      | 정선읍<br>애산리 | 432-504 | 도  | 196     | 196   |       | 정선군        | -       | -  | -                              |
| 3      | 정선읍<br>애산리 | 432-505 | 대  | 858     | 22    |       | 정선군        | -       | -  | -                              |
| 4      | 정선읍<br>애산리 | 592-11  | 제  | 2,142   | 1,665 |       | 국(건설<br>부) | -       | -  | -                              |
| 5      | 정선읍<br>애산리 | 592-3   | 대  | 794     | 8     |       | 정선군        | -       | -  | -                              |
| 6      | 정선읍<br>애산리 | 592-4   | 대  | 1,416   | 12    |       | 정선군        | -       | -  | -                              |
| 7      | 정선읍<br>애산리 | 592-8   | 대  | 2,676   | 8     |       | 정선군        | -       | -  | -                              |
| 8      | 정선읍<br>애산리 | 592-9   | 장  | 3,450   | 122   |       | 정선군        | -       | -  | -                              |
| 9      | 정선읍<br>애산리 | 432-358 | 도  | 4,048   | 34    |       | 정선군        | -       | -  | -                              |
| 계      |            |         |    | 15,851  | 2,206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1-510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마.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고한읍행정복지센터

바.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이상 (2021. 4. 28. ~ 2021. 5. 13.)

사.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고한읍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526호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정 선 군 수

#### 1. 제정(개정)이유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에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3. 주요내용

가. [별표 1] 개별법령에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
| 납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 1건 | 3,000원 | 삭제  |
| 납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 1건 | 2,000원 | 삭제  |
| 납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 1건 | 3,000원 | 삭제  |
|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건 | 1,000원 | 삭제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에 이중으로 규정된 [별표 2]삭제

다. 수수료 감면대상자 감면 고무원 날인규정 [별표 3] 신설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4.27. ~ 2021.5.17.(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세무과

- 연락처 : 전화(033-560-2283), 팩스(033-560-2587)
- 주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별지별표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수수료의 금액) <u>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u><br>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u>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u> -----<br>-----<br>-----<br>-----<br>-----<br>-----<br>-----. |



## [별표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 1건 | 1건3,000원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 1건 | 1건2,000원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 1건 | 1건3,000원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건 | 1건1,000원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생략                 |    |          |    | ○(현행과 같음) |    |    |    |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2]

###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 종 류                                                                                                                    | 표준금액        |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             |
|-------------------------------------------------------------------------|-------------|
|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9. 삭제 <2016. 12. 30.>                                                  |             |
|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0원 |
|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28.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남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1건당 9,000원  |
|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1건당 7,500원  |
|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필지당 800원   |
|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                           | 1주택당 800원   |

|                                                                                   |             |
|-----------------------------------------------------------------------------------|-------------|
| 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
|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주택당 800원   |
|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당 2,000원  |
|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52. 삭제 <2016. 12. 30.>                                                            |             |
|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            |
|----------------------------------------------------------------------|------------|
|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57. 삭제 <2016. 12. 30.>                                               |            |
| 58. 삭제 <2016. 12. 30.>                                               |            |
| 59. 삭제 <2016. 12. 30.>                                               |            |
|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63. 「삭제 <2016. 12. 30.>                                              |            |
|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2. 삭제 <2016. 12. 30.>                                               |            |
| 73. 삭제 <2016. 12. 30.>                                               |            |
|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             |
|---------------------------------------------------------------|-------------|
|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80. 삭제 <2016. 12. 30.>                                        |             |
|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04. 삭제 <2016. 12. 30.>                                       |             |

|                                                                                                      |             |
|------------------------------------------------------------------------------------------------------|-------------|
|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 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12. 삭제 <2016. 12. 30.>                                                                              |             |
|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              |
|--------------------------------------------------------------------|--------------|
|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5,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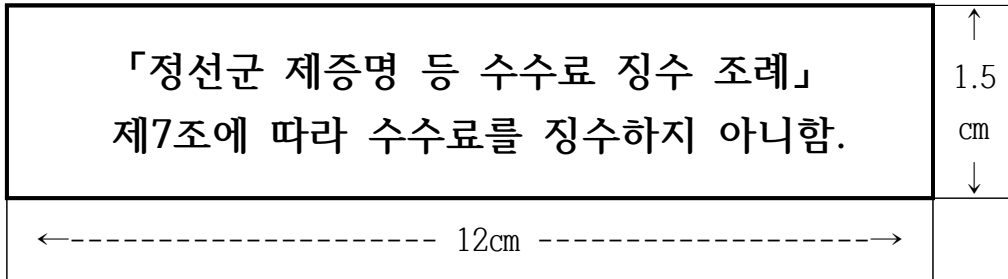


|                                                                  |              |
|------------------------------------------------------------------|--------------|
|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 1건당 100,000원 |

|                                                                               |                                     |
|-------------------------------------------------------------------------------|-------------------------------------|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
|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br>(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원                          |
|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별표 3]

고무인(제7조 관련)



정선군 공고 제2021-536호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 우리 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제한기준이 낮아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 허가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 지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편입 기준을 달리 두어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거밀집지역의 구성 기준 정비
  - 5호 이상 가구가 밀집된 주거밀집지역 구성 기준 정비(안 제2조제5호)
-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 기준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안 제3조제2항제8호)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안 별표1)
- 제한구역 외 가축사육 제한기준 마련
  -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가축의 사육이 환경에 고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규정 마련(안 별표1)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입법예고 : 2021. 04. 28. ~ 2021. 05. 18.

####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48),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건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달성 할 수 없는”을 “달성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고시 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한구역 내 축사의 증·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현대화 시설로 동일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축사주위는” 을 “축사 주위는”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서식 ‘가축사육신고서’ 를 삭제한다.

#### 부 칙

제2항(경과조치)을 삭제한다.

제3항(종전)을 삭제한다.

제4항(종전)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생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 제2조(정의) (생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제한구역"이라 함은 <u>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u> 구역을 말한다.                                                               | 3. ----- <u>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u> -----.                                                                                                            |
| 4. "사육"이란 가축을 <u>별표에서 정한 규모로</u>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 4. ----- <u>1마리 이상</u> -----<br>-----<br>-----<br>-----.                                                                                                                                   |
| 5. "주거밀집지역"이란 <u>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u> | 5. -----<br>-----<br>-----<br>----- <u>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중 소 사육시설의 축</u> |

제3조(제한구역) ① 제한구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2. 일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구역.

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신 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정선군수(이하

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  
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하  
다.

제3조(제한구역) ① <삭 제>

1. <삭 제>

2. <삭 제>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구역 안에서 별표의 가축사육 마릿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가축사육신고서에 의거 사유개시 10일전에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  
-----  
달성할 수 -----

② -----  
-----  
-- 고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 <삭 제>

제4조의2(제한구역 내 축사의 증·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현대화 시설로 동일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생 략)

1. 축사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 5. (생 략)

## 제6조(시행규칙) (생 략)

부칙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③(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④(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현행과 같음)

1. 축사 주위는 -----  
-----.

## 2. · 5. (현행과 같음)

## 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② <삭 제>

부칙 ③ <삭 제>

부칙 ④ <삭 제>

## - 현행 [별표]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전부제한구역(가축사육 불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에 의한 주거(주거 밀집지역에 한함)·상업·공업지역</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 밀집지역</li>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li> <li>「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li> <li>「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li> <li>「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li> <li>「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li> <li>「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li> <li>「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li> <li>「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li> <li>「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li> <li>「습지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습지보호구역</li> <li>「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제2조 관련)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기준 초과시)</li> </ul> |
|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 일부제한구역(제한적 가축사육 가능 범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사슴, 양, 말, 젖소: 5마리</li> <li>- 돼지, 개: 5마리</li> <li>-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li> </ul> </li> <li>주거 밀집지역에서의 거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400마리 미만은 50미터 이상, 400마리 이상은 70미터 이상</li> <li>- 사슴, 양, 말, 젖소: 400마리 미만은 75미터 이상, 400마리 이상은 110미터 이상</li> <li>- 돼지, 개: 1,000마리 미만은 400미터 이상, 1,000마리 이상 3,000마리 미만은 700미터 이상, 3,000마리 이상은 1,000미터 이상</li> <li>- 닭,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은 250미터 이상, 20,000마리 이상 50,000마리 미만은 450미터 이상, 50,000마리 이상은 650미터 이상</li> </ul> </li> </ul> |
|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 하는 지역                                                                                                                                                                                                                                                                                                                                                                                                                                                                                                                                                                                     |

## ※ 비교

-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로 한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대상은 신축시설과 증·개축 시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함.

## ○ 정선군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 초과허용 마릿수

| 제한지역별  | 가 축 사 육 범 위         |           |                |
|--------|---------------------|-----------|----------------|
|        | 소, 사슴, 양, 말, 젖소(마리) | 돼지, 개(마리) | 닭, 오리, 메추리(마리) |
| 일부제한구역 | 0                   | 0         | 5              |

## - 개정안 [별표]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정선군 전역

## 1. 주거밀집지역 기준

- 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양(염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젖소, 사슴, 말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 닭, 오리, 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 밀집지역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의한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 7.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수변지역

## 9.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 10. 「습지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 11.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12. 「하천법」 제7조에 의한 국가,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 1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5m 이내의 지역

## 1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 비고

-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대상은 신축시설과 증·개축시설에 한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542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영농철 임대 농기계를 영농 적기에 농가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제·개정하여, 임대 농기계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에 따른 임대료 감면 : 50퍼센트  
(안 제10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 4. 30. ~ 5. 20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2)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전화 : 033-560-2554
- 팩스 : 033-560-4819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농업기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건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개 정 안 | 찬성여부 |    | 의 건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대상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임대료 등) ①·② (생략)<br>③ 임대한 농업기계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9조(임대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br><br>1. (생략)<br><u>&lt;신 설&gt;</u><br><br><u>2.·3.</u> (생략)<br><br>②·③ (생략)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대상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br>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